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2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2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5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산림분야 자조금 설치·운영의 지원, 도시숲 조성·관리 확대 등의 주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및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7명(8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2월 21일”을 “2027년 12월 21일”로, “2025년 12월 22일”을 “2027년 12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21일”을 “2027년 12월 21일”로, “2025년 12월 22일”을 “2027년 12월 22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21일”을 각각 “2027년 12월 2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월 12일”을 “2028년 1월 1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 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 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 은 <u>2025년 12월 21일까지</u> 존속 하며, <u>2025년 12월 22일</u>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 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7년 12월 21일</u> ----- --- <u>2027년 12월 22일</u> ----- ----- -----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 사보 5명)은 <u>2025년 12월 21일</u> 까지 존속하며, <u>2025년 12월 22</u> <u>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 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 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② ----- ----- ----- ----- <u>2027년 12월 21일</u> -- ----- <u>2027년 12월 22</u> <u>일</u> ----- -----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u>2025년 12월 21일</u>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u>2025년 12월 21일</u>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u>2026년 1월 12일</u>까지 존속한다. ②·③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 12월 21일</u>----- -----. ② ----- ----- ----- <u>2027년 12월 21일</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u>2028년 1월 12일</u>----- -----. ②·③ (현행과 같음)
---	---